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법률고문을 두고 법률”을 “입법·법률고문을 두고 입법·법률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“법률고문”을 각각 “입법·법률고문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법률고문”을 “입법·법률고문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법률고문”을 “입법·법률고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률고문은”을 “입법·법률고문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률고문”을 “입법·법률고문”으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“법률고문”을 각각 “입법·법률고문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의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자문료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법률문제”를 “입법 및 법률문제”로 하고, 같은 항 및 제2항 중 “법률고문”을 각각 “입법·법률고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법률고문”을 각각 “입법·법률고문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「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」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법률고문직”을 “입법·법률고문직”으로 하며, 같은 서식 중 “법률고문”을 “입법·법률고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위촉된 법률고문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입법·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시행 당시 임기 중에 있는 법률고문은 해당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임기 중에 있는 법률고문으로서 이미 한 차례 이상 연임한 사람은 해당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승　　낙　　서

본인은 「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·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성명　　(인)

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

위 촉 장

성명

귀하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	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법률고문을 두고 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입법·법률고문을 두고 입법·법률 ----------.
제2조(직무) ①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 략) ②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. ④ 법률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	제2조(직무) ① 입법·법률고문-----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입법·법률고문----------. ③ 입법·법률고문----------. ④ 입법·법률고문----------.
제3조(정원) 법률고문의 정원은 7	제3조(정원) 입법·법률고문----

명 이내로 한다.	----------.
제4조(위촉) 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교수 또는 그에 준하는 자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.	제4조(위촉) ① 입법·법률고문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② 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.	② 입법·법률고문은 -------- ----------.
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.	③ ---------- -------- 입법·법률고문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.
제5조(해촉) 의장은 법률고문의 임기종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	제5조(해촉) ----- 입법·법률고문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	5. 입법·법률고문---------- ----------
제6조(임기)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.	제6조(임기) ①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의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<신 설>	②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자문료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.
제7조(회의) ① 의장은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	제7조(회의) ① ----- 입법 및 법률문제---------- 입법·법률고문----------.
②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는 회당 30만원(부가가치세 미포함)의 범위 내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 입법·법률고문----------.
제8조(자문료 등) ① 법률고문에게는 건당 30만원(부가가치세 미포함)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	제8조(자문료 등) ① 입법·법률고문----------.
② 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건당 300만원(부가가치세 미포함)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.	② 입법·법률고문----------.
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「서울특별	③ 입법·법률고문----------

시 송파구 소송사무처리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----------.
[별지 제1호 서식]	[별지 제1호 서식]
승 낙 서 본인은 「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의회의 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. 년 월 일 성명 (인)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귀하	**승 낙 서** 본인은 「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·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. 년 월 일 성명 (인)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귀하
[별지 제2호 서식]	[별지 제2호 서식]
위 촉 장 성명 귀하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.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	**위 촉 장** 성명 귀하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.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제46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(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9. 14.>